

롯데인프라셀 파트너사 행동규범

서문

롯데인프라셀은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경영 비전 달성을 통해 미래 가치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합니다. 당사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인류 공통의 시대적 과제를 인식하고,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을 통해 인류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정에 롯데인프라셀의 파트너사들이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본 규범은 롯데인프라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경영의 기치 아래 작성되었습니다. 본 규범은 롯데인프라셀이 파트너사들에 대하여 환경 보호, 인권 존중, 안전 관리, 준법·윤리경영의 측면에서 요청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롯데인프라셀의 파트너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여 당사와 함께 ESG 경영에 동참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당사의 파트너사 뿐 아니라 파트너사에 각종 부품과 원부자재 등을 납품하고 포장, 임가공, 이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하위 공급망 업체도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본 규범은 UN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RBA) 행동규범 등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규범과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1. 환경 보호

롯데인프라셀의 파트너사는 롯데인프라셀이 수립한 환경경영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사는 롯데인프라셀의 환경경영점검에 따른 개선 조치 활동에 동참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가. 법규 준수

- (1) 파트너사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환경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파트너사는 환경 규제 변화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3) 파트너사는 환경 관련 법규 내용과 변화 동향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물질 규제 준수

파트너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규에서 특정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물질의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물질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물질 관련 규제가 있는 경우, 파트너사는 이와 같은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환경 영향 검토

- (1) 파트너사는 제품을 생산·유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2) 파트너사는 환경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 파트너사는 제품을 생산·유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줄인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후위기 대응

(1) 파트너사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롯데인프라셀의 노력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2) 파트너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하고, 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 파트너사는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4) 파트너사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공정개선, 원료 및 연료 대체, 자원 재활용과 재사용 등의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자원 선순환

파트너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바. 수자원 관리

파트너사는 물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고 그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사. 오염물질 관리

(1) 파트너사는 오염물질 발생원을 파악하고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상시적으로 파악·관리하여야 합니다.

(2) 파트너사는 오염물질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 특성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은 이를 식별하기 위한 표시를 하는 등 안전하게 취급·보관·사용·폐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3) 파트너사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4) 공정상 생성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연무제, 부식제, 미세먼지, 오존 파괴 물질 및 연소 부산물은 배출 이전에 규정에 따라 특성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감시하여 통제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오존 파괴 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및 해당 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파트너사는 자사의 대기 배출가스 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아. 소음 방지

파트너사는 소음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 소음 수준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2. 인권 존중

롯데인프라셀의 파트너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국제적으로 선포된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사는 어떠한 편견과 불법적인 차별 없이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 차별 금지

- (1) 파트너사는 성별, 인종,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보상, 교육훈련, 배치 등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 (2) 파트너사는 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3) 파트너사는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나. 노동 법규의 준수

- (1) 파트너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노동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파트너사는 임직원에게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으로 정해진 최저 임금, 초과 근로수당,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파트너사는 임직원의 근무시간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으로 정해진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무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 (4) 파트너사는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 관련 원본 서류(여권, 근로허가증 등)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하게 하여야 합니다.
- (5) 파트너사는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지급 내역이 기록된 서류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6) 파트너사는 임직원에게 대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인도적 대우

- (1) 파트너사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 등 비인도적인 대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2) 파트너사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3) 파트너사는 임직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이에 관하여 임직원에게 충분히 공지 및 교육하여야 합니다.
- (4) 파트너사는 임직원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대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사례 발생시 임직원의 요청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라. 노동 3 권의 보장

- (1) 파트너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에서 보장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등 노동 3 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2) 파트너사는 임직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인하여 차별대우, 보복조치, 괴롭힘 등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3) 파트너사는 임직원이 근로조건, 경영방침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 (1) 아동노동은 어떠한 형태로도 금지됩니다. 파트너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 및 아동노동에 관한 국제 협약으로 정해진 고용 최저연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파트너사는 18 세 미만인 직원의 고용이 필요한 경우 준법경영 담당자와 상의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 연령 요구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파트너사는 18 세 미만인 직원을 고용할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시하고,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 투입하여서는 안되며, 노동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파트너사는 아동노동에 관여되어 있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아서는 안됩니다.

바. 강제노동의 금지

(1) 강요, 구속 또는 그 밖의 강제 노동 등은 어떠한 형태로도 금지됩니다. 파트너사는 노동을 강제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제적 상황, 채무관계 등에 기하여 정신적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2) 파트너사는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정신적 압박을 가하여 노동을 강제하는 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아서는 안됩니다.

사. 취약 집단

(1) 파트너사는 자신의 비즈니스 및 공급망 내에서 취약한 집단의 권리, 특히 여성, 원주민, 아동,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파트너사는 모든 고용 수준에 걸쳐 차별 없는 급여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내부 조치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3) 파트너사는 성희롱 예방, 신체적 안전 제공, 수유모를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여성 근로자들에게 특히 일반적인 건강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3. 안전 관리

롯데인프라셀의 파트너사는 제품을 생산·유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과정에서 임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가. 법규 준수

- (1) 파트너사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안전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안전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파트너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안전 관련 법규 내용과 변화 동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며,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진단

- (1) 파트너사는 사업장의 안전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이를 안전성 평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2) 파트너사는 사업장 내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 (3) 파트너사는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방호벽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 (4) 파트너사는 근로자가 장시간 반복적인 노동을 수행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기타 신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근로자들의 신체부담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5) 임신부와 수유모를 고(高) 위해 요소 작업 환경에 배치하지 않고, 업무 관련 요인을 비롯해 작업장 내 임신부와 수유모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이고, 수유모를 위한 합리적인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6) 파트너사는 원부자재의 보관 및 이송, 제품의 생산, 포장 및 운송 등의 전과정에 현지 주민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 관리 체계 구축

(1) 파트너사는 사업장의 책임자 직속의 안전관리 전담 부서를 배치하고, 그 업무상 독립성을 확보하여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2) 파트너사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즉각적 조치 사항, 대피 절차, 보고 체계, 후속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파트너사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임직원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파트너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교육

(1) 파트너사는 롯데인프라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 안전 교육에는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파트너사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파트너사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장 안전 보건 정보와 교육을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마. 식당 위생과 숙소 관리

파트너사는 근로자에게 청결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과 식당의 안전과 위생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또한 안전하고 청결하게 관리 해야 합니다. 아울러 숙소에는 비상구와 소방장치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준법·윤리경영

롯데인프라셀의 파트너사는 준법·윤리경영을 실천하고 기업을 바르게 경영하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최고 수준의 윤리기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내 규정 준수 관리 시스템(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시행하고 임직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 불법적 이익의 금지

(1) 파트너사의 임직원은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비롯한 제3자에게 금전상·비금전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2) 파트너사의 임직원은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목적으로 제 3 자로부터 금전상·비금전상 이익을 수령하거나 수령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3) 파트너사는 임직원의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제공 또는 수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나. 경영의 투명성 제고

- (1) 파트너사의 모든 기업 활동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파트너사의 모든 거래는 회계장부 등 내부 자료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 (2) 파트너사의 경영활동, 재무 상태, 안전 관리 실태, 환경 보전 실태, 성과에 관한 정보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 및 관행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다. 불공정 거래 방지

- (1) 파트너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및 독점 규제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파트너사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3) 파트너사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한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라. 개인정보 보호

- (1) 파트너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파트너사는 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3) 파트너사는 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 지식재산권 보호

(1) 파트너사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파트너사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바. 신원 보호와 보복금지

(1) 파트너사는 문제를 제기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보복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2) 파트너사는 문제를 제기하는 근로자의 신원과 관련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5. 분쟁광물 사용 금지

파트너사는 분쟁지역에서 채굴되거나,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환경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취득한 광물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6. 경영 시스템

롯데인프라셀의 파트너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가. 지속가능한 경영의 표명

- (1) 파트너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그 실행 계획을 문서로 정리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 (2) 파트너사는 경영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 및 대표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 (3) 파트너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목표 및 그 실행 계획에 관하여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고, 그 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합니다.

나.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본 규범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 규정 및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경영 절차 내 반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 위험 관리

- (1) 파트너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 인권, 노동, 안전, 준법 및 윤리에 관한 위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2) 파트너사는 환경, 인권 및 노동, 안전, 준법 및 윤리에 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거하고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3) 파트너사는 환경, 인권 및 노동, 안전, 준법 및 윤리에 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사의 정책, 관행, 기대사항 및 성과에 관한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직원과 공급업체 및 고객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 공급업체의 책임

본 규범의 요구 사항을 공급업체에 전달하고 공급업체가 이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